

[일련번호 : 1]

경기도체육회

주의·개선조치

[제 목] 규약 및 기타규정 관리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농구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농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정관」에 의거하여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에 맞춰 규약 및 기타규정을 절차에 맞게 의결하여 제정·개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2조(규약변경)에 따르면 협회는 규약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절차에 맞게 의결한 후 본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며, 동 규정 제53조(규정 등 제정·개정)에 따라 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을 제정·개정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농구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52조(규정변경) 및 제53조(규정 제·개정 등)에도 상기와 동일한 규정이 존재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협회의 규약 및 기타규정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가지의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 되었다.

가. 「경기도농구협회 규약」 개정 절차 누락

협회는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2조(규약변경)에 따라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현재 협회가 사용하고 있는 규약에는 ****년 *월 **일 스포츠공정위원회와 *월 **일 이사회를 거쳐 *월 **일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총회의 의결 절차가 누락되었고, 본회는 해당 규약에 대하여 승인 요청을 받거나, 승인을 한 기록이 없다.

추가로 협회는 ****년 본회에 규약 개정(안) 승인 요청[○○ 제**-**호 (***.**.*)]을 하였지만 본회는 이에 대하여 미승인 통보[○○○○○○○-**** (***.**.*)]하였고 이후 협회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경기도농구협회 기타규정 관리 소홀

협회는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3조(규정 등 제정·개정)에 따라 협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절차를 거쳐 규정을 제정·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협회는 「선거관리규정」 등 9개의 규정을 사용하고 있지만 규정의 제정·개정 일자에 대한 표기가 없고, 규정의 표지와 내용에 있는 제목이 상이하다. 그리고 「경기도체육대회 규정」과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규정」은 여러 종목의 종합대회 규정이 아니라 각 대회의 농구종목에 대한 규정으로 규정 제목의 재정비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각종 선발전(소년체전, 전국체전, 도민체전 등)에 관한 규정은 대한민국농구협회 경기규칙이나 대회 참가요강을 따르는 것이 대부분이고 각 규정별로 제4조(공인구)를 제외한 내용들은 유사하여 정비가 필요하다.

협회의 규약 및 규정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경기도농구협회 규약 및 규정 현황

규정 제목(표지)	규정 제목(내용)	최근 제·개정일자	비고
경기도농구협회 규약	경기도농구협회 규약	****.**.**. .	체육회 미승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경기도농구협회 회장선거규정	****.**.**. .	
전국소년체육대회 선발전 규정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 선발전 규정	****.**.**. .(추정)	
전국체육대회 선발전 규정	전국체육대회 경기도선발전 규정	****.**.**. .(추정)	
경기도체육대회 규정	경기도체육대회 규정	확인불가	규정제목 부적정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규정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규정	확인불가	규정제목 부적정
경기도도지사사기회 규정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농구대회 규정	확인불가	
상임이사회 규정	상임이사회 규정	****.**.**. .	이사회 미의결
심판·경기원 수당 규정	경기도농구협회 심판·경기원 수당 규정	****.**.**. .(추정)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 .	이사회 미의결

[조 치 사 항] 경기도농구협회장은

2가지 부적정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속하게 개선조치하고 본회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기도농구협회 규약」 개정 절차 누락 및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2조(규약변경)에 따라 절차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받아 규약을 최신화하기 바랍니다. (주의)

나. 경기도농구협회 기타규정 관리 소홀

협회 기타규정에 대한 제정·개정 연혁 표시 및 규정 제목 변경 등 체계적인 규정 관리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규정 제정·개정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3조(규정 등 제정·개정)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일련번호 : 2]

경기도체육회

주의·개선요구

[제 목]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 미흡

[소 속 기 관] 경기도농구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농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회 「규약」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협회는 사업 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 자문기구로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제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협회 「규약」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에도 상기와 동일한 규정이 존재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경기도농구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에서 2가지 사항의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가.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부적정

협회 「규약」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4조(구성)제2항에 따라 본회 및 본회 관계단체 임·직원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감사기간 내(****. **. **.~**.) 확인결과 「****년도 ○○○○ ○○○ ○○○○」 단기일자리 지원사업 관련 인턴 사원으로 근무중인 ○○○은 협회의 직원이면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어, 협회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을 구성하였다.

나. 각종 위원회 미구성 및 제규정 미제정

협회는 「규약」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이사회 자문기구로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협회는 각종 위원회 미구성 및 제규정 미제정 되어있어,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육성과 경기력 향상 등 필요한 지원을 심의·의결하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협회의 위원회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경기도농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현황

연 번	구 분	구 성	제 규정	비 고
1	스포츠공정위원회	7명	제정	위원 확인 필요
2	대회위원회	미구성	미제정	
3	경기력향상위원회	미구성	미제정	
4	선수위원회	미구성	미제정	
5	심판위원회	미구성	미제정	
6	생활체육위원회	미구성	미제정	

※ 경기도농구협회 제출 자료 재구성

[조 치 사 항] 경기도농구협회장은

협회 「규약」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4조(구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자격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나. 각종위원회 미구성

협회 「규약」 및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37조(각종위원회의 설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의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한 이사회 자문기구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 및 제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일련번호 : 3]

경 기 도 체 육 회

개 선 조 치

[제 목] 문서 관리 미흡

[소 속 기 관] 경기도농구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농구협회(이하 “협회(연맹)”라 한다.)는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및 협회 「기본규정」(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보존 및 관리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는 「규약」제50조(사무국 운영 등)제4호에 따라 협회에서 생성되고 수발신되는 모든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도록 되어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협회는 정기종합감사 기간에 본회가 요청하는 자료를 회신하지 못하고 담당자의 부재로 인하여 원활한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인의 부재로 협회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확인 할 수 없었다.

기존 ○○○○이 관리하던 사업정산 서류 등의 기록물은 정리가 잘 되어 있었으나 그 이외의 기록물은 전자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외에는 문서 열람이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협회는 경기도체육회관에 위치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본회가

제공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조 치 사 항] 경기도농구협회장은

본회가 제공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을 ****년도 *월부터 사용 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정비하여 기록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기록물은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간 서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본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경기도체육회 개선조치

[제 목] 경영공시 미이행

[소 속 기 관] 경기도농구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농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협회 「규약」에 의거, 협회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 「규약」 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 제53조(규정 제·개정 등) 제56조(경영공시)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협회는 규약 및 제규정, 결산서, 이사회 및 총회 결과, 외부평가, 감사결과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감사기간(****.**.**~**.) 내 확인결과 협회가 경영 공시할 수 있는 창구(홈페이지, 포털 카페 등)가 없으며, 이에 따라 규정상 공시하도록 되어있는 어떠한 문서도 게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조치사항] 경기도농구협회장은

협회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관련 문서를 공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시기 바라며, 「규약」에 따라 경영공시 항목들을 게재하시기 바랍니다.